

#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5,624,165	16,068,725
일반회계	480,296,782	14,408,903
특별회계	55,327,383	1,659,821
기타특별회계	55,327,383	1,659,82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31,968	102,95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92,878	452,786
수질개선특별회계	10,102,704	303,08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4,385	14,232
주차장특별회계	65,050	1,95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2,606,588	678,198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492,829	14,7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7,300	2,31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057,628	31,729
행복주택특별회계	1,616,816	48,504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309,237	9,27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